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1.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유효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 기간이 만료 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 도말까지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 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 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4)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5)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2. 준수사항

(1) 이용계약은 개인별 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3 이용절차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 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상담한다.

(3) 욕구사정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 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 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제공 :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제공 후 심신상태 확인

4 계약목적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정 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2026년도기준)

[표1] 노인장기요양기관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6년	2,512,900	2,331,200	1,518,200	1,409,700	1,208,900	676,320

(재가급여) 기본수가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	9%, 6%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표2] 재가장기요양기관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방문요양	구분	금액(원)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2026년	17,450	23,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방문목욕	구분	차량 이용 시		방문목욕(차량 미이용)
		차량 내 목욕	가정 내 목욕	
	2026년			50,100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60% 경감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 서 를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응급상황발생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119즉시신고

③ 기본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보호자)의무

① 월 이용료(본인부담료) 납부 의무

② 가정의 건전한 환경 및 생활 조성

③ 가정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수급자의 권리

①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어르신은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어르신은 부당한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한 가정 환경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4.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본인부담금 납부하지 아니하고 3개월간 연체하였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급여제공하기에 어려울때

(5) 장기병원 입원으로 방문요양 급여제공 할 수 없을 경우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